

『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역보건법」,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근거하여 관련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소 수가, 진료비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편의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(당초) 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
(변경) 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
-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 및 문장 정비(안 제1조~제4조)
- 규칙으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
 -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에 대한 지원(안 제7조제2항)
- 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납부에 관한 사항 현행화(안 제6조,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,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
「국민건강보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조례 명칭을 「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」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하면서,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의 현행화, 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정부정책 등 행정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최상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, 실효성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